



제 418회 국회 (정기회)
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< 게임제작·배급·제공업 폐업신고 기한 연장 >

■ 이재정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2392호)

2024. 11.

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김원모

목 차

I. 제안경위	1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: 이재정의원 등 12인

나. 발 의 일: 2024. 7. 30.

다. 회 부 일: 2024. 7. 31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게임제작업, 게임배급업 또는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,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제1항).

Ⅲ. 검토의견

1. 개정안의 요지

개정안은 현행 폐업일로부터 7일인 게임제작·배급·제공업의 폐업신고 기한을 3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.

[개정안 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제30조(폐업 및 직권말소) ①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<u>7일</u>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.	제30조(폐업 및 직권말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30 <u>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2. 검토의견

현행법은 게임제작·배급·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 폐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통상적으로 안전·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(의약품제조업 폐업 후 7일 이내¹⁾) 등 특별한 경우에만 7일의 신고기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게임제작·배급·제공업과 같은 일반적인 경우에 7일의 기한은 상당히 짧은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,²⁾ 특히 업계 특성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많아 생계로 인한 폐업신고 기한 준수의 어려움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있었음.³⁾

이에 개정안은 폐업신고 기한을 폐업일로부터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폐업신고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, 규제 완화 차원에서 안전 등과 관계되지 않은 사업의 폐업신고 등은 그 신고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추세라는 점⁴⁾, 게임제작·배급·제공업의 폐업은 국민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30일 이내로 폐업신고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1) 「약사법」 제40조(폐업 등의 신고)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제조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

2) 한편, 소비자보호를 위해 어린이집의 경우 폐업 2개월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.

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36조(어린이집의 폐지·휴지)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(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)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·휴지·재개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3) 「중소기업·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(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, 2019.10.10.)」에서 출판업 등 26개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 연장을 규제혁신 과제로 추진한 바 있음.

4) 영화업,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제작업 등은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2021.12.28.)됨에 따라 7일에서 30일로 연장됨.

참고로, 유사한 성격을 가진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상 신문 사업,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상 영화업 등의 경우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.

[폐업신고 기한을 30일로 규정한 입법례]

법률명	관련 조문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	제11조(폐업 및 직권말소)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경우에는 폐쇄한 날부터 <u>1개월 이내</u>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.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	제28조의2(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) ①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<u>30일 이내</u> 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.
공연법	제9조(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)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<u>30일 이내</u> 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.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	제29조(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)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<u>30일 이내</u> 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한편, 안 부칙 제2조는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‘게임제작업, 게임배급업 또는 일반게임제공업’을 영위하던 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, 현행법 제26조⁵⁾ 및 안 제30조제1항⁶⁾에 따르면 일반게임제공업 외에 청소년계

5)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6조(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) 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·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

임제공업·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·복합유통게임제공업도 모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안 부칙 제2조의 ‘일반게임제공업’은 ‘게임제공업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.

문 의 처

02)6788-5376
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. 다만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.

③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④~⑦ (생략)

- 6) 「**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**(이재정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2202392호)」
제30조(폐업 및 직권말소) ①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.